

16. 割賦金融業 營業認可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6-2號 1996. 1. 19

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회 사 명	대 표 자	소 재
연 합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이 병 균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-31
금 호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이 삼 섭	서울 종로구 서린동 70
대 구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최 상 회	대구 중구 동인동3가 361-1
대 한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김 정 식	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-5
동 부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박 명 노	서울 강남구 을지로3가 259-1
동 아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신 현 일	서울 중구 다동 33
신 대 한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이 정 호	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-32
신 안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김 상 훈	서울 강남구 청담동 49-5
주 식 회 사 영 남 주 택 할 부 금 용	박 창 호	대구 동구 신천동 286-1
주 식 회 사 우 성 주 택 할 부 금 용	손 욱 기	서울 서초구 1586-7
한 국 주 택 할 부 금 용 주 식 회 사	정 흥 기	광주 남구 서동 112